

양식어장의 시설기준(제15조제1항 관련)

1.해조류양식어업

양식어업의 종류	양 식 방 법	양 식 물	시 설 기 준	
			시 설 규 모	어장면적에 대한 시 설 비 율 (단위: 퍼센트)
가. 수하식 양식어업	1. 건홍식 · 지주망홍	김 · 파래	100제곱미터당 1책 (1.8미터×40미터)	10 내지 25
	· 부류망홍	김 · 파래	100제곱미터당 1책 (1.8미터×40미터)	10 내지 25
	2. 연승식	미역 · 다시마 · 톳 · 파래 · 갈 래곰보 기타 유용 수산식물	50제곱미터당 1줄(100미터)	5 내지 10
	나. 바닥식양식어업	투석식 · 천해	돌김 · 우뚝가사 리 · 꼬시래기 기 타유용수산식물	90 이상

2. 패류양식어업

양식어업의 종류	양 식 방 법	양 식 물	시 설 기 준	
			시 설 규 모	어장면적에 대한 시 설 비 율 (단위: 퍼센트)
가. 수하식양식어업	1. 간 이 식	굴 기타패류	18제곱미터당 1대(가로 6미터, 세로 3미터, 높이 2미터)	5 내지 10
	2. 연 승 식	굴	50제곱미터당 1줄(100미터)	5 내지 10
		전복 · 진주조개 홍합 · 가리비 기타 패류	50제곱미터당 1줄(100미터) 다만, 서해안, 강원도 및 경상 북도에 있어서의 가리비의 경우 에는 100제곱미터당 1줄(100미 터)	5 내지 10
	3. 뗏 목 식	굴 · 진주조개 기타패류	165제곱미터당 1대 (9미터 ×18미터)	3 내지 10
나. 바닥식양식어업	1. 살 포 식 · 간석지	백합	1헥타아르당 종묘살포량	90 이상

	· 천 해	고막 · 바지락 · 가무락 · 동죽 · 개량조개 기타 패류	1톤 내지 3톤 1헥타아르당 종묘살포량 2톤 내지 5톤	90 이상
		피조개 · 새고막 · 홍합 · 가리비 기타패류	1헥타아르당 종묘살포량 1톤 내지 1.5톤. 다만, 피조개 는 40미만 내지 50미만, 가리비 는 5미만 내지 10미만	90 이상
	2. 투석식등 · 간석지	굴	1헥타아르당 투석량 5천개이상 (1개당40킬로그램 이상) 또는 타 이어 8천개 내지 1만개	90이상
	· 천 해	전복 · 소라 기 타패류	1헥타르당 투석량 1천200개이상 (1개당 40킬로그램 이상) 및 종 묘 2만마리 이상 살포	90 이상

3.어류 등 양식어업

양식어업의 종류	양 식 방 법	양 식 물	시 설 기 준	
			시 설 규 모	어장면적에 대한 시 설 비 율 (단위: 퍼센트)
가. 가두리식양식어업	가두리식	어류 · 갑각류	25제곱미터당 1대 (가로5미터 , 세로5미터)	5 내지 20
나. 축제식양식어업	축 제 식	어류 · 갑각류	1헥타아르당 종묘살포량 2만마리 이상	20 이상
다. 수하식양식어업	연 승 식	우렁챙이 · 미 더덕 기타 유용 수산동물	50제곱미터당 1줄(100미터)	5 내지 10
라. 바닥식양식어업	살포식 · 간석지	갯지렁이 기타 유용수산동물	1헥타아르당 종묘살포량 1톤 내지 1.5톤	90 이상
	· 천 해	성게 · 해삼 기 타유용수산동물	1헥타아르당 종묘살포량 1톤 내지 1.5톤	90 이상

4. 복합양식어업

양식어업의 종류	양 식 방 법	양 식 물	시 설 기 준	
			시 설 규 모	어장면적에 대한 시 설 비 율 (단위: 퍼센트)
가. 수하식양식어업	1. 연 승 식	미역 · 다시마, 미역 · 톳, 다시	50제곱미터당 1줄(100미터)	5 내지 10

나. 바닥식양식어업	2. 건 홍 식 과 연 승 식	마 · 톳, 미역 · 다시마 · 톳, 미역 · 우렁챙이, 다시마 · 우렁챙 이, 다시마 · 전 복, 톳 · 전복, 미역 · 전복, 미역 · 가리비 다시마 · 가리비 김 · 가리비	김:100제곱미터당 1책 (1.8미터×40미터) 가리비:100제곱미터당 1줄 (100미터)	5 내지 13 5 내지 10
	1. 살 포 식	해삼 · 성게	1헥타아르당 종묘살포량 1톤 내지 1.5톤	90 이상
	2. 살 포 식 과 투 석 식	굴 · 바지락	굴:헥타아르당 투석량5천개이상 (1개당 40킬로그램 이상) 바지락:1헥타아르당 2톤 내지 3톤	10 내지 25 80 이상
	다. 혼합양식어업			
다. 혼합양식어업	1. 건 홍 식 과 살 포 식	김 · 바지락, 김 · 동죽, 김 · 개량조개	김:100제곱미터당 1책 (1.8미터×40미터) 바지락 · 동죽 · 개량조개: 1헥타 르당 종묘살포량 2톤 내지 3톤	10 내지 25 80 이상
	2. 연승식과 천해투석식	톳 · 전복, 다 시마 · 전복, 미역 · 전복	톳 · 다시마 · 미역: 50제곱미터 당 1줄 (100m) 전복:1헥타아르당 투석량 1천 200개이상(1개당 40킬로그램이 상) 및 종묘 2만마리이상 살포	5 내지 10 80 이상

5. 협동양식어업

해조류양식어업 · 패류양식어업 · 어류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의 양식어장시설기준에 의한다.

※비고 : 시 · 도지사는 지역여건 및 병충해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식물별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.